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30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최민희 · 노종면 · 김 현
정동영 · 김우영 · 이해민
박민규 · 황정아 · 한민수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2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침해사고 발생 시의 이용자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통

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32조의20(침해사고 발생 시의 이용자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 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 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 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u> <u>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사실을 통지할 것</u> <u>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u> <u>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u>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7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u>
--	--